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8.11.29.>

건축 · 대수선 · 용도변경 허가서

•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신축	허가번호	2019-건축과-신축허가-65 (2019-3070211-1101-65)
건축주	최 _		
대지위치	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		
지번	772 - 28		

※ "지번"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·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 · 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대지면적	342 ㎡		
건축물명	정릉동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	주용도	공동주택(다세대주택)
건축면적	197.17 ㎡	건폐율	57.65 %
연면적 합계	580.24 ㎡	용적률	169.66 %
가설건축물 존치기간			

동 고유번호	동 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	동 고유번호	동 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
1	주건축물제1동	580.24	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 • 대수선 • 용도변경 (변경)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 • 대수선 • 용도변경 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19년 03월 19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2종) 70g/㎡]